제966호

2008. 4. 7.(월)

발행인 : 송파구청장
편집인 : 공 보 과 장
(☎ 410-3322~4)

송파구보

선람	기관의 장

차 례

◉ 고 시

제2008-25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3

제2008-26호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7

◉ 공 고

제2008-294호 : 부의안건(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공고 ····· 9

제2008-295호 : 재산공개자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고 ····· 10

◉ 입법예고

제2008-299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2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송파구보 발행 안내

· 구보 발간일은 매주 월요일이며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 게재합니다.
· 구보 발간절차

접 수	⇒	인쇄소 송부	⇒	발 간
월~목요일 (전자문서로 접수)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 (홈페이지게재)

공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송파구 SONGPA-GU

제2008-301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제2008-302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인사발령 ····· 19

고 시

서울특별시송파구 고시 제2008-25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사업시행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택재건축사업·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상 호 :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나. 대표자 : 조합장 김범옥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3-12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8. 04. 01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 405,782.40㎡ ○ 건 폐 율 : 21.96%

○ 높 이 : 지하3층, 지상30층 .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용 적 률 : 265.14%(229.97+35.16) ○ 연 면 적 : 1,466,635.14㎡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81A형, 81B형, 81C형, 81D형, 99A, 99B, 107형, 109A형, 109B형, 109C형, 109D형, 109E형, 109F형, 125A형, 125B형, 125C형, 125D형, 125E형, 138A형, 138B형, 138C형, 138D형, 138E형, 165A형, 165B형, 165C형, 98A형, 198B형, 아파트 90동, 총8,106세대
(임대1,390세대 포함)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신설) 결정도서

1)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광로	2	28	50	주간선 도로	13,250	천호동 (광로5)	과천시계	일반 도로	-	-	남부 순환로
변경	광로	2	28	50~53	주간선 도로	13,250 (708)	천호동 (광로5)	과천시계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확폭
기정	광로	2	29	50	주간선 도로	7,300	잠실대교 남단	장지동 시계	일반 도로	-	-	송파대로
변경	광로	2	29	50~55	주간선 도로	7,300 (177)	잠실대교 남단	장지동 시계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확폭
기정	소로	3	-	7.5	국지도로	72	석촌동 296-18	석촌동 297-18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72 (72)	석촌동 296-18	석촌동 297-18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	7.5	국지도로	152	석촌동 297-18	석촌동 297-27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1	7.5~10	국지도로	152 (81)	석촌동 297-18	석촌동 297-27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확폭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196	석촌동 297-18	석촌동 221-7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1	2	6~10	국지도로	1,196 (532)	석촌동 297-18	석촌동 221-7	일반 도로	-	-	일부 구간확폭

※ ()안은 정비구역안에 해당되는 사항임.

2) 공원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제1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가락동 479 일원	-	(증) 28,702	28,702	-	조성후 기부채납
신설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가락동 479 일원	-	(증) 1,600	1,600	-	조성후 기부채납

3) 완충녹지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녹지	완충 녹지	가락동 479 일원	-	(증) 4,472	4,472	-	조성후 기부채납(서울시 건축조례 28조 시설녹지와 동일)

4) 학교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초등학교	가락동 479 일원	11,570	(증) 646	12,216	서고51호 ('81.2.23)	기부채납 (가락초등학교)
신설	학교	-	가락동 479 일원	-	(증) 12,705	12,705	-	기부채납

5) 공공청사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공공청사	주민 커뮤니티센터 (동사무소 등)	가락동 479 일원	-	(증) 2,830	2,830	-	기부채납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10. **관계도서** : 게재생략 [송파구 주택과에 비치]

고 시

서울특별시송파구 고시 제2008-26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설치 일자	소 재 지
	X(m)	Y(m)		
8175	445493.35	207091.10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76	445502.47	207297.08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77	445523.60	207168.44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78	445529.25	207049.59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79	445536.50	206896.10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0	445568.25	206860.66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설치 일자	소 재 지
	X(m)	Y(m)		
8181	445669.17	206828.03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2	445919.11	206781.63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3	446040.12	206771.85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4	446032.25	206955.38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5	446016.32	207102.45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6	446013.92	207229.04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7	446013.25	207352.98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8	445979.89	207398.04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89	445805.52	207432.67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90	445590.86	207475.43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8191	445511.91	207490.73	2008. 3. 31	송파구 잠실동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대한지적공사 강동·송파구 지사 및 송파구청 토지관리과			
비 고				

공 고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08-294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제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안	환 경 과

공 고

◉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08-29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의원 이정인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소 속	송파구의회		직위(직급)	구의원		성 명	이 정 인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주)					
배우자	삼성증권	600	매각	54,000	'08.1.2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2,260	매각	200,846	'08.1.4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1,415	매각	238,412	'08.1.4	우리투자증권	
	보령제약	120	매각	5,412	'08.1.7	우리투자증권	

소 속	송파구의회	직위(직급)	구의원		성 명	유 수 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주)				
본 인	리플래시기술 주식회사	105,000	매각	99,750	'08.3.17	이홍원
	기업은행	90	매각	1,413	'08.2.29	현대증권
	기업은행	8	매각	120	'08.3.17	굿모닝신한증권
	KT&G	32	매각	2,374	'08.3.26	굿모닝신한증권

소 속	송파구의회	직위(직급)	구의원		성 명	최 조 웅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 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주)				
본 인	유한양행	50	매각	9,100	'08.3.28	굿모닝신한증권
	LG상사	300	매각	5,775	'08.3.28	굿모닝신한증권
	현대제철	120	매각	8,232	'08.3.28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전자	20	매각	12,220	'08.3.28	굿모닝신한증권
	KT&G	120	매각	8,940	'08.3.28	굿모닝신한증권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08-29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소득층의 발굴·신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위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구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위원을 위촉하며(안 제2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안 제3조)

다.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하며(안 제5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안 제6조)

1) 관내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5)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 제안
6) 기타 관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라. 구청장은 위원 회의를 소집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9조)

마.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차량 및 행사용품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410-3280, 팩스 410-38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08-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종전 전액 지원방식에서 2007년 50% 지원방식으로 변경 시행한 결과 구청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불신과 관리주체의 사업비 납부 기피 및 선정 후 사업 포기, 사업 재선정으로 인한 공사 적기시행 곤란, 불용예산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 바 지원대상, 지원방법, 시행방법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도입(안 제명변경)

나. 공동주택 지원대상 개정 (안 제4조)

- 제4조제1항제8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설

다. 관리주체의 부담금 예치방법 개정 (안 제5조)

-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예정사업비 50%를 송파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예치” 하던 것을 “구청 시행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사업비의 50%를 송파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계좌에 예치” 하도록 변경

라. 지원사업비 부담금 비율 개정 (안 제5조)

- “공동주택 지원 예정사업비의 50%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지원하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0% 까지 지원할 수 있고, 1,000만원 미만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전액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던 것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중 1,000만원 까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0%만 지원” 할 수 있도록 변경

마. 사업 시행방법 신설 (안 제5조제8항)

- “지원사업의 시행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410-3382, FAX 410-38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08-30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송 파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변경)

나. 사업시행 방법 개정 (안 제6조)

- “사업의 시행”을 “구청의 사업 시행”으로 변경

다. 관리주체의 사업 시행 신설 (안 제6조의2)

- “공동주택 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
-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신설
- “지원대상 관리주체는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월 이내에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설
- “구청장은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공사 완료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신설
-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한 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를 신설
-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교부한 지원금을 당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신설
-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를 신설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안 제9조)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에서 “사업 시행방법

결정”을 신설

마.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기준 개정 (안 별표)

○ “분야별 기준” 변경

바. 제출 서식 신설 (안 별지)

○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 교부 신청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 정산서, 준공검사조서 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410-3382, FAX 410-38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인사발령

◉ 일반직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성 명	발령내용	현부서	
		부서 및 직위	직 급
김 시 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규정에 의해 직위해제	도 로 과	시설(토목)7급

발령일자 : 2008.3.28.자

◉ 2008년도 3월 명예퇴직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서 및 직위	직 급
1	최 의 용 (52. 6. 29)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행정관리국	지방행정주사

발령일자 : 2008. 3.31.

◉ 신규임용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서 및 직위	직 급
1	박 연 심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관리국 수습근무를 명함	신 규	
2	노 경 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관리국 수습근무를 명함	신 규	
3	김 효 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관리국 수습근무를 명함	신 규	
4	김 동 현	지방공업서기보시보에 임함 행정관리국 수습근무를 명함	신 규	

임용일자 : 2008. 3.31 자

◉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인사교류)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서 및 직위	직 급
1	임 현 정	대구광역시 중구 전출을 명함	송 파 2 동	지 방 행 정 서 기
2	김 도 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로 강임함 송파2동 근무를 명함	대구광역시	지 방 행 정 주 사 보

발령일자 : 2008. 4. 1 자.